

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

1. 신청인

성명	주민등록번호
주소	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

2. 신청내용

① 귀속연도		② 납부기한		③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	종합부동산세	
					농어촌특별세	

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등 기 승 낙 서

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.

년 월 일

승낙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국세징수법」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2.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
-------------	--

작성방법

- ① 납부유예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.
-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,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.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.
-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란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등기승낙서’란에 부동산의 소유자(등기의무자)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.
- 이 신청서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등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